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53
----------	-------

발의연월일 : 2025. 6. 27.

발 의 자 : 서삼석 · 김동아 · 이원택
박용갑 · 문대림 · 윤준병
임호선 · 임미애 · 조계원
문금주 · 정을호 · 위성곤
이개호 · 안도걸 · 김영배
서미화 · 허 영 · 조인철
이병진 · 양부남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농어업인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 도입 근거에 대해 규정함.

최근 빈번하게 농어업재해가 발생하며 피해규모도 늘어나 농어업재해보험을 가입한 농어업인은 보험으로 보상받고 있으나, 다음 해 재가입시 보험료율이 증가해 경제적 부담이 커짐.

한편, 농어업인이 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역조합에 방문하여 문의해야 함.

이에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한 농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농어업재해보험의 가격 공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권리 보장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의 제목 중 “· 시행”을 “·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대상 품목”을 “대상품목, 대상 지역”으로, “대상 지역에”를 “상품 개발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의3을 제2조의4로 하고,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시기·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어업인의 피해경감 노력 불이행에 따른 할증은 제외한다.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해보험가입자 또는 전년도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금액 보다 많은 재해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재해보험가입자의 농어업 형태나 농어업 전체의 경영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할 것
2. 농어업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생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농어업에 종사할 것
3. 농어촌에 거주해야 할 것
4. 직전년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농어업재해보험의 가격의 공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농어업재해보험가격시스템(이하 “농어업재해보험가격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별 가격 비교
2. 보험상품 별 가격 비교
3. 재해보험 대상 품목 별 가격 비교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⑥ (생략)

<신설>

제2조의3(재해보험 등의 심의)

(생략)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① (생략)

<신설>

② (생략)

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2조의3(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시기·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4(재해보험 등의 심의)

(현행 제2조의3과 같음)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농어업인의 피해경감 노력 불이행에 따른 할증은 제외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9조(재정지원) ① (생 략)

<신 설>

제19조(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 음)

② 정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해보험가입자 또는 전년도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금액 보다 많은 재해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재해보험가입자의 농어업 형태나 농어업 전체의 경영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할 것

2. 농어업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생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농어업에 종사할 것

3. 농어촌에 거주해야 할 것

4. 직전년도 기준 농어업 외 중

② ~ ④ (생략) <신설>	<u>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u>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 <u>제25조의3(농어업재해보험의 가</u> <u>격의 공시) ① 농림축산식품부</u> <u>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u>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u> <u>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u> <u>부가 운영하는 농어업재해보험</u> <u>가격시스템(이하 “농어업재해</u> <u>보험가격시스템”)에 게시하여</u> <u>야 한다.</u> <u>1. 지방자치단체 별 가격 비교</u> <u>2. 보험상품 별 가격 비교</u> <u>3. 재해보험 대상 품목 별 가격</u> <u>비교</u>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